

**2026년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 원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2026. 8. 5.

목 차

1) 공급대상	4p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6p
3) 사전 주택공개	16p
4)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17p
5) 심사서류 제출안내	20p
6)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24p
7)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25p
8) 유의사항	26p
9) 임대신청문의	27p
10) 주택별 위치 및 교통편 안내	28p
11) 주택별 입주자 유의사항	31p
〈별표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향목 설명 및 공적 자료	40p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44p

2026년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 원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은 1~2인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받습니다. 청약을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과정에서 불이익(가점사항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는 경우, 서류 미제출으로 인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마감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본 공고의 각 주택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접수 시 모두 취소처리 되므로 반드시 한 주택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대상 주택개요

단 지	소재지	건물 최고층수	입주자격
방화동원룸 (유니트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9	13층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문정동원룸	송파구 새말로 114-1	5층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역삼동원룸	강남구 도곡로23길5	5층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강일2 준주거2 (리엔타운)	강동구 상일로12길 89	5층	1~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약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울현리엔파크	강남구 밤고개로21길 56	5층	1~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약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천왕여성안심주택	구로구 천왕로 50	9층	1인가구 여성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공급절차 및 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주택사전공개	▶	인터넷 청약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26. 8. 5. (수)		26. 8. 11.(화) ~ 8. 13.(목)		26. 8. 18.(화) ~ 8. 20.(목)		26. 8. 31. (월)		26. 9. 2.(수) ~ 9. 4.(금)		26. 11. 20.(금)		26. 11. 30.(월) ~ 12. 2.(수)

※ 입주예정기간은 2026. 12. 21.(월) ~ 2027. 2. 19.(금)입니다.

※ 상기 공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공급대상

가. 금회 공급대상 : 총 65호

주택	신청 유형 (㎡)	총 세대수	공급 대상	금회공급						
				계	일반공급			우선공급		
					소계	일반	주거 약자	소계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
합계		395		65	39	37	2	26	18	8
방화동원룸 (유니트로)	13㎡	75	1인	14	7	7	-	7	4	3
	17㎡			3	2	2	-	1	1	-
	19㎡			1	1	1	-	-	-	-
	22㎡			1	1	1	-	-	-	-
	23㎡			1	1	1	-	-	-	-
문정동원룸	14㎡	31	1인	16	8	8	-	8	5	3
역삼동원룸	12㎡	30	1인	6	3	3	-	3	2	1
강일2준주거2 (리엔타운)	19㎡	76	1인	4	2	2	-	2	1	1
	30㎡		1~2인	1	1	1	-	-	-	-
	33㎡			1	1	-	1	-	-	-
울현리엔파크	29㎡	87	1~2인	4	3	2	1	1	1	-
천왕여성안심주택	14㎡	96	1인 여성	13	9	9	-	4	4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적용

나. 모집세대 및 임대료

주택	신청 유형 (㎡)	금회 모집 세대	총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합계	계	계약금	잔금	
계		65	395	-	-	-	-	-	-	-	-	-
방화동원룸 (유니트로)	13㎡	14	75	13.98	15.54	5.90	10.35	45.77	16,490	3,298	13,192	158,600
	17㎡	3		17.55	19.11	7.4	12.99	57.05	20,590	4,118	16,472	197,500
	19㎡	1		19.69	21.65	8.31	14.57	64.22	23,200	4,640	18,560	222,900
	22㎡	1		22.77	24.35	9.61	16.85	73.58	26,670	5,334	21,336	255,400
	23㎡	1		23.87	25.87	10.07	17.67	77.48	28,060	5,612	22,448	269,400
문정동원룸	14㎡	16	31	14.44	12.35	0.94	-	27.73	24,590	4,918	19,672	164,400
역삼동원룸	12㎡	6	30	12.37	8.61	-	-	20.98	21,730	4,346	17,384	132,700
강일2준주거2 (리엔타운)	19㎡	4	76	19.08	11.09	3.54	9.09	42.8	10,260	2,052	8,208	125,500
	30㎡	1		30.43	17.97	5.63	14.54	68.57	16,450	3,290	13,160	182,900
	33㎡	1		33.83	19.64	6.28	16.15	75.9	18,200	3,640	14,560	199,000
울현리엔파크	29㎡	4	87	29.45	15.35	4.15	16.77	65.72	17,060	3,412	13,648	168,700
				29.59	15.32	4.16	16.86	65.93	17,060	3,412	13,648	168,700
천왕여성 안심주택	14㎡	13	96	14.08	12.57	3.83	-	30.48	8,020	1,604	6,416	136,400

※ 주택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유형별 대표면적이며, 각 세대마다 구조 및 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동일함.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7%임.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임.(전환한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다. 임대기간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재계약(관련 법령이 정하는 임대 의무기간 내)]

라. 주요 유의사항

- 금회 모집세대는 모두 전세대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공기를 재공급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 선정의 경우 해당 유형의 입주자가 퇴거하여 공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실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자 유효기간 안에 입주를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은 무작위 전산추첨입니다.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로 동호변경 등은 불가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발코니확장형 창호로 인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등 사용시에는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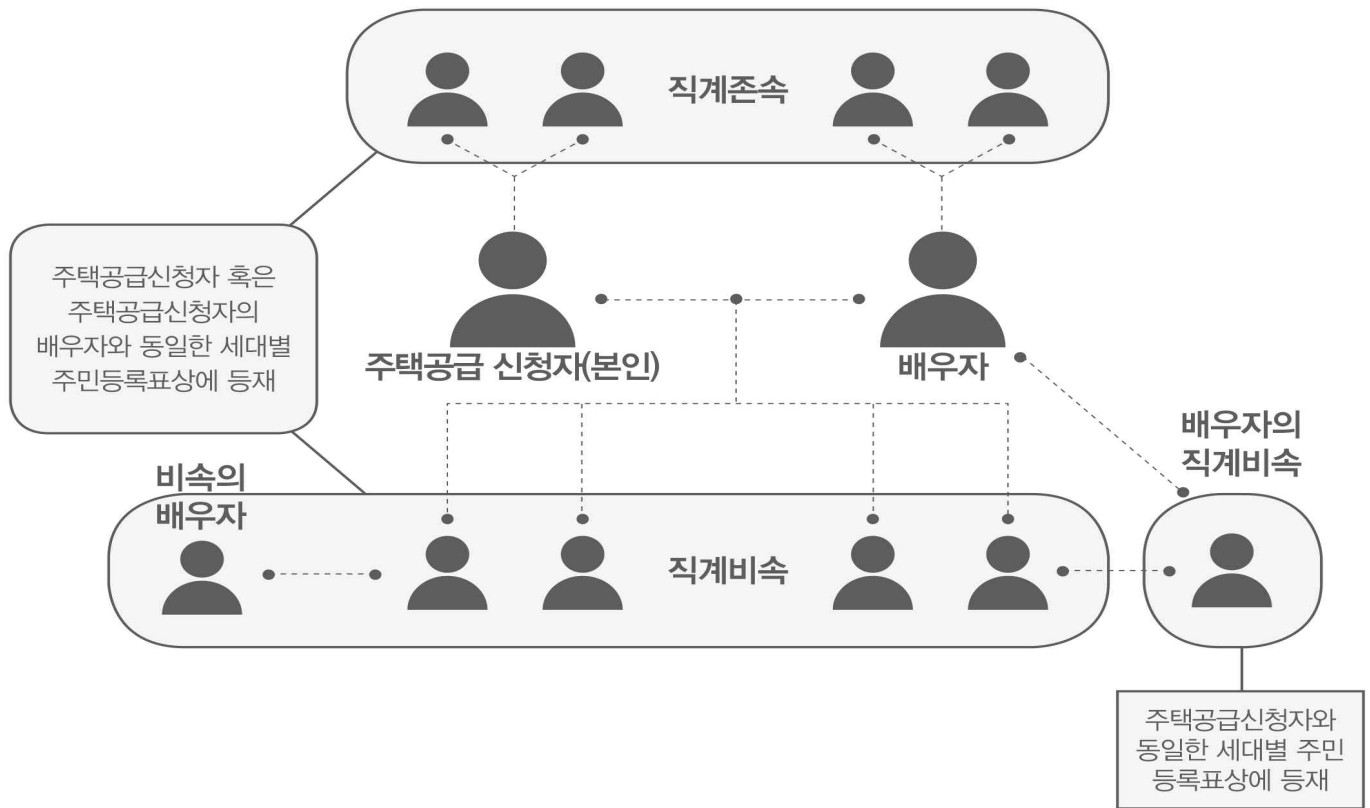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무주택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배우자가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지 않는 외국인 - 배우자가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등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유의사항

- 신청인(계약자)는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합니다.(외국인 불가)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①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②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③ 그 외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배우자가 세대분리하여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과 우편 청약을 동시에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 기준입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행위가 적발된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모두 입주 자격이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 상실 시 (무주택, 서울시 거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확인한 사람
 -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가. 방화동원룸, 문정동원룸, 역삼동원룸: 일반공급(1인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2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결격)] ※ 월평균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신청자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금액 산정시점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 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참조)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공급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일반공급(일반)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입주자 선정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률	→	배점합산	→	추첨

나. 방화동원룸, 문정동원룸, 역삼동원룸, 강일2준주거2: **우선공급(1인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 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만19세 이상(2007. 8 .5.이전 출생자) ~ 만39세이하(1986. 8. 6. 이후 출생자)의 중소기업업체 청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기업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2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결격)] ※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종확인 은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종된 사업장은 제외)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가능, 임원은 제외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④,⑦ 의 가점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재선정시 ④,⑦의 가점은 포함되므로 해당 가점의 대상자는 반드시 기입)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기초생활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 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④,⑦ 의 가점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재선정시 ④,⑦ 의 가점은 포함되므로 해당 가점의 대상자는 반드시 기입)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재선정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입주자 선정순서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률	→	배점합산 →
기초생활수급자	배점합산	→	추첨

다. 강일2준주거2(33㎡), 율현리엔파크(29㎡) : 주거약자(1인가구 및 2인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또는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①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1961. 8. 5.이전 출생), ②장애인, ③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④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⑥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⑦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 1~7급자 중 한 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가능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입주자 선정순위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거약자용 주택 가점기준표 - 신청자 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② 사회 취약계층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에 해당)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③ 청약저축 납입 회차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납입 인정 회차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된 경우 말소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주거약자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입주자 선정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률	→	배점합산	→
			추첨

라. 강일2준주거2, 율현리엔파크 : 일반공급(1인가구 및 2인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u>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강일2준주거2 19㎡~30㎡, 율현리엔파크 29㎡)</u> 또는 <u>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강일2준주거2 30㎡, 율현리엔파크 29㎡)</u> 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 2인가구는 19㎡ (강일2준주거2) 유형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1인 가구는 모든 유형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신청자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금액 산정시점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참조)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공급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입주자 선정순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률	→	배점합산	→
			추첨

마. 율현리엔파크 : 우선공급(1인가구 및 2인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만19세 이상(2007. 8 .5. 이전 출생자) ~ 만39세이하(1986. 8. 6. 이후 출생자)의 중소기업업체 청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기업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 ※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종확인인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종된 사업장은 제외)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가능, 임원은 제외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④,⑦의 가점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재선정시 ④,⑦의 가점은 포함되므로 해당 가점의 대상자는 반드시 기입)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r><td>2인가구</td><td>3,519,762원</td><td>4,693,016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기초생활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15p)의 가점으로 선정 - ④,⑦의 가점은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에는 적용 제외 (단, 우선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일반 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어 재선정시 ④,⑦의 가점은 포함되므로 해당 가점의 대상자는 반드시 기입)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r><td>2인가구</td><td>3,519,762원</td><td>4,693,016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2인가구	3,519,762원	4,693,016원								

※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재선정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요약

입주자 선정순서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률	→	배점합산	→	추첨
기초생활수급자	배점합산	→			추첨

사. 천왕여성안심주택 : 일반공급(1인여성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여성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2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결격)] ※ 월평균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신청자의 소득을 말하며, 소득금액 산정시점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 하되 우리 공사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소득항목별 조사항목은 공고문 후단 <별표1>참조)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able>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공급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① 생년월일이 늦은자 ② 서울시 전입일자가 빠른 자(주민등록등·초본상 확인가능한 날짜만 인정)						

아. 천왕여성안심주택 : 우선공급(1인여성가구)

구 분	입 주 자 선 정 방 법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8. 5.) 현재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별표1>자산보유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4,542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자 중 중소기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임원제외)(※여성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2인이상 가구는 신청자격 제외(결격)] ※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종확인 은 사업자등록증 업태로 확인.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종된 사업장은 제외)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가능, 임원은 제외 <table><tr><th>가구원수</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th><th>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th></tr><tr><td>1인가구</td><td>2,669,354원</td><td>3,432,027원</td></tr></table>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가구원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2,669,354원	3,432,027원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2순위에게 공급 ①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②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① 생년월일이 늦은자 ② 서울시 전입일자가 빠른 자(주민등록등·초본상 확인가능한 날짜만 인정)						

※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재선정하며, 우선공급 신청미달로 인한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표(일반공급, 우선공급)

※ 강일2준주거2, 율현리엔파크 주거약자 제외

동일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아래의 가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함.

[입주자 선정 기준표 - 신청자 기준]

구	분	3점	2점	1점
①	공급신청자 나이(만나이 기준)	60세이상	40세이상~ 60세미만	20세이상~ 40세미만
②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만19세이후)	5년이상	3년이상~5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③	청약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이상~ 24회미만	6회이상~ 12회미만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중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 3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점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⑥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 3점				
⑦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자 : 3점 (아래 항목 중 1개 항목만 인정)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결정 및 등록)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단, 보훈청에서 수권자로 인정하는 자에 한함) 5.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이고 영구 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1인 90%, 2인 80%) 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시 최종 전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거주불명등록 등)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 공공임대주택 거주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서로 판단
- ※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제조업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업태상의 제조업으로 확인함.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종된 사업장은 제외)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그 제조업체 직장가입자에 한함
- ※ 청약통장은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회차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3

사전 주택공개

▶ 신청접수 전 주택공개

- 공개기간 : 2026. 8. 11.(화) ~ 8. 13.(목)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공개방법 : 현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 및 관할센터에 방문 전 연락하여 입주자가 자유롭게 확인
- 주택공개

구 분	주택공개 관련 문의
방화동원룸(유니트로)	유니트로 관리사무소(☎ 02-2662-4426) 또는 강서센터(☎ 02-2657-8100~1)
문정동 원룸	송파센터 ☎ 02-3400-4700~1
역삼동 원룸	강남센터 ☎ 02-2086-9800~1
강일2준주거2	강일2준주거2 관리사무소(☎ 02-428-0996) 또는 강동센터(☎ 02-6946-3600~1)
울현리엔파크	울현리엔파크 관리사무소(☎ 02-3412-3935) 또는 강남센터(☎ 02-2086-9800~1)
천왕여성안심주택	천왕여성안심주택 관리사무소 (☎ 02-3666-9560) 또는 구로센터(☎ 02-6340-9000~1)

- ※ 질서유지를 위해 유형별 대표세대만 공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개는 청약접수 전 현장이해를 위한 사전공개이며, 특정세대를 지정하여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당첨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받으며, 주택공개시 공개되지 않은 주택에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합의에 의한 당첨자간 상호교환도 불가)
- ※ 주택은 공개기간 외에는 공개하지 않으며, 최종 당첨 동호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전 대상자에게만 공개합니다.
- ※ 금번 공급 주택의 다른 호실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주택 공개기간에 소음발생 및 사생활침해로 인하여 기존 입주세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문시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접수 일정 및 방법

※ 본 공고의 각 주택들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중복 접수시 모두 취소처리 되므로 반드시 한 주택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를 진행하오니 제출서류를 구비하시어 아래의 우편접수(등기우편) 기간 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우선공급 해당자가 일반공급으로 착오 신청한 경우에도 변경 불가)
- ※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 분	신청자격별		신청접수 일정 (인터넷 청약)	
	신청자격	순위	일자	시간
방화, 문정, 역삼, 강일2 울현, 천왕여성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일반공급, 주거약자)	1순위	2026. 8. 18.(화) 10:00 ~ 8. 19.(수) 17:00	
	우선공급 (중소(제조)업체, 기초생활수급자)	1,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일반공급, 주거약자)	2순위	2026. 8. 20.(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접수 일정

-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처리됩니다.
- ※ 일반공급, 주거약자 1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8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거약자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 2순위 접수여부는 각 순위별 청약접수 종료 다음순위 청약일[26. 8. 20.(목)] 오전 10:00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우편 신청접수

본 모집공고는 인터넷신청이 원칙이며, 현장(대면)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①일반공급, 주거약자 1순위자(소득 50%이하)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및 ②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를 진행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우편접수 할 시 접수받지 않으며 서류는 폐기처리함

우편 청약	기간	☐ 2026. 8. 13.(목) ~ 8. 14.(금) ※ 2026. 8. 14.(금) 소인분 및 8. 18.(화) 도착분까지 유효
	방법	☐ 등기우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등기우편으로 송부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1~2인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담당자 앞
	유의 사항	☐ 등기우편 외의 방법(택배, 일반우편 포함)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소득기준, 신청주택 유형 등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의 단순접수 등 신청대행만 진행하므로 신청서상 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한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서 우편 제출 전 최종검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완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기재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인터넷 청약, 스마트폰으로도 OK!”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접수 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서류심사대상자가 결정되며, 제출 서류와 신청내용이 누락되거나 다른 경우(자격요건(무주택여부, 월평균소득, 자동차),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유무, 서울시 계속거주 등), 서류심사시 해당 가점이 차감되거나 부적격으로 처리되오니 공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고내용을 정확히 인지한 후 가급적 해당 서류를 사전에 발급받아 확인한 후 신청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발급/소지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인터넷청약에서 해당 주택 선택 → 서약서 체크 → 청약신청서 작성 → 작성청약서 최종확인 → 인증서 로그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 공동인증서는 인터넷뱅킹을 위하여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형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 종류 : 네이버,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신한,뱅크샐러드, 하나

● 신청시간

인터넷 신청시간은 신청접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기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시 최종확인 완료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하고 신청 후 취소는 해당순위 신청 마감일시까지만 가능하니 신청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활한 청약접수를 위하여 접속자가 몰리지 않는 시간대에 다시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신청마감 일시 전에는 야간에도 인터넷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간 : 2026. 8. 18.(화) 10:00 ~ 8. 19.(수) 17:00 [1순위 및 우선공급 1,2순위],
2026. 8. 20.(목) 10:00~17:00 [2순위]

- 1순위 신청자수가 공급세대의 8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2026. 8. 20.(목)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순위 청약접수 여부는 1순위 청약접수 종료 후 2026. 8. 20.(목) 오전 10:00에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납입인정회차)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공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 2026-000380

5

심사서류 제출안내

-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8배수** 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 제출기간 내에 직접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유의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필요시 보완서류 제출 요청)하여 당첨자 및 예비자를 발표 예정입니다
- 자격 입증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고, 자격 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에서 탈락됩니다.
- 모든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6. 8. 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서류심사 탈락자 또는 미계약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부를 추가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안내하는 기간 내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적격자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최종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발표일시 : 2026. 8. 31.(월)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게시

■ 심사서류 제출기간

- 제출기간 : 2026. 9. 2.(수) ~ 9. 4.(금)
-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1~2인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접수
[※2026. 9. 4.(금) 소인분, 9. 8.(화) 도착분까지 유효하게 접수처리]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8. 5.)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주택별 제출서류

※ 공통

구 비 서 류		비 고	부수
공통	심사서류 제출신청서	·제출서류 목록에 해당여부 체크하여 제출(공사양식)	1통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배우자 등본 분리 시 분리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1통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제출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이력)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되게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1통
	금융정보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에 정자체 서명 제출해야 인정.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및 접수가 거부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1통

※ 가점대상자 증빙서류(하단 표 확인, 해당자만 제출)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체근로자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임원은 제외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제조업체 가입분) ②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구분 전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시 접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1357) •등기소

가 점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252일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자	공제부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원본지참)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 이력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확인서(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책정기간 기재)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외의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구청
일군위안부 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추천서(자치구확인),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의 장 •해당구청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계약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모든면복사),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본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수행자(유족)확인원 등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 **우선공급대상자 준비서류(우선공급 신청자에 한함)**

우 선 공 급 대 상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 ※ 제조업인 개인사업장 종사자도 신청 가능, 임원은 제외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중소 제조업체 가입분) ②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기록구분 전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불가시 점 수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해당직장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1357) •등기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증빙서류(주거약자용주택 신청자에 한함)**

주 거 약 자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등록일 반드시 기재)	•주민센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보훈지청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총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합니다.
- 배정된 동호는 입주자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청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배수 내외의 예비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예비자 순위는 당첨예정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6. 11. 20.(금) 17: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당첨자의 주소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계약일시** : 2026. 11. 30.(월) ~ 12. 2.(수)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12. 2.(수) 하루만 방문계약 진행.

▶ **방문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

▶ **(방문계약시) 구비서류**

- ① 계약금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입금확인증
- ② 신분증(본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위조방지 처리된 신 운전면허증)
- ③ 본인도장(본인계약시 서명가능)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대리할 경우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추가적인 제출서류)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신청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제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1통,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당첨자 발표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발송예정

당첨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되는 경우(주요사항 예시)

-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공고일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주택소유자로 검색된 자가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당첨(예비)자, 추가 심사대상자 등이 무주택기간, 가점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점되어 (예비)당첨 최저 점수 미만인 경우
- 계약시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추후 월평균소득이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의 월평균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추후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계약기간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 서류의 결격 및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
- 해당순위 신청접수일이 아닌 날짜에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첨자 발표이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등(착오에 의한 당첨 포함) 등

- 해당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아니한 접수는 신청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기존 입주자의 퇴거로 인한 공가 호수이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로서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을 사회보장시스템에 의하여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 후에 주택소유, 총자산초과 및 차량소유, 소득초과, 심사서류제출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등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사실의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됩니다.
-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변경사실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이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u>*단 자동차 가액 초과는 재계약 1회 허용에서 제외</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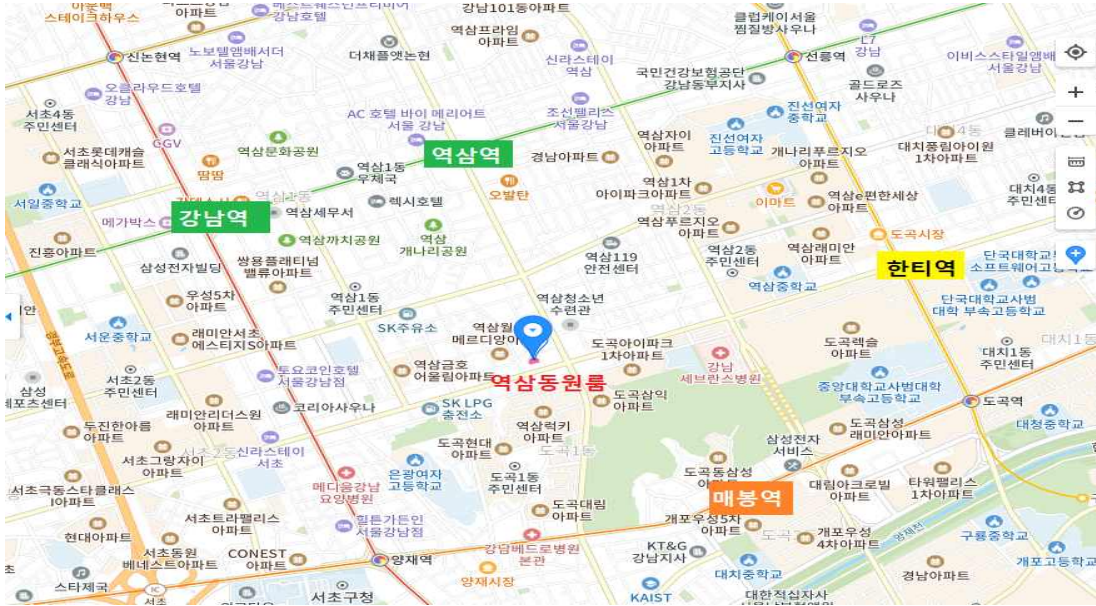
- 이 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주택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고, **주택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가구원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소유여부 및 자산보유기준은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취소 및 계약이 거절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52조, 제53조를 따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발코니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벽 및 천장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새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미니발전소가 기 설치된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으며, 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여 추진함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 공사 홈페이지 공고내용, 공사에서 배부하는 공고(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임대신청 문의

- 대표전화·인터넷청약관련 문의 : 1600-3456(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당첨확인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ARS(1600-3456)조회
- ※ 유선(전화)확인 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원룸	위 치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21길 49(방화동 847)
	교통편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 1,2번출구 하차 도보 50m거리
	약도	
문정동 원룸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114-1(문정동 83-23)
	교통편	지하철 8호선 문정역 2번출구, 도보10분 또는 지하철 8호선 장지역 1번출구, 도보10분
	약도	

역삼동 원룸	위 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3길5(역삼동 798-28)
	교통편	분당선 한티역 7번출구 정류장 340, 147, 4432버스 승차, 도곡1차아이파크,역삼청소년수련관 정류장 하차 후 도보6분
	약도	

강 일 2 준주거2 (리 엔 타운)	위 치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12길 89(강일동 732)
	교통편	지하철 5호선 강일역2번출구 정류장 3212 승차 고덕리엔파크2단지 정류장 하차 후 도보 1분
	약도	

울현리엔파크	위치	서울시 강남구 울현동 524
	교통편	지하철3호선 수서역 402, 3426버스 승차, 세곡2지구 3,4단지 정류장 하차후 도보 10분(600m)
	약도	

천왕여성안심주택	위 치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50(천왕동 277-5)
	교통편	지하철 : 7호선 천왕역에서 도보 약 10분 버스 : 천왕역2번출구정류장 구로04번, 구로14번, 구로15번 승차 후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입구 정류장 하차후 도보 4분
	약도	

※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원룸(유니트로) 입주자 유의사항

- 김포국제공항이 인접(약1km 내)하여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이 있음
- 서남하수처리장이 인접(약 1.5km 내)해 있어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남부순환로가 인접하여 교통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북측 및 동측으로 도시철도 5호선 개화산역의 역사 및 승무원사무소가 1.5m~5m의 거리로 **상당히 밀접**하고 있어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청약신청 전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소음정도를 직접 확인 후 신청바람(입주 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불가)
- 지중으로 인접하게 도시철도 5호선이 통과하므로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건물 서측으로는 서울시 공용주차장이 인접하여 소음 및 야간 차량의 조명으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현장 방문하여 인접 시설물 및 건물현황을 직접 확인 후 신청바람
- 주차장은 **지하1~2층으로 총 14대가 주차가능**하며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일방향의 곡선으로 진출입시 차량간 충돌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인 주차차량에 대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통제 및 관리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옥외공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이 배치되어 미관 저하, 소음 및 악취 등의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층 필로티 하부, 8층 및 옥상에는 휴게시설이 조성되어 있음
- 1층 필로티 진입부에는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음
- 승강기는 15인승(속도90m/min) 1대 설치로 사용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저층세대는 계단사용을 권장
-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 사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는 신발장, 옷장, 싱크대(가스레인지 2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신발장 하부에는 급수급탕계량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음
- 각 세대는 원룸형으로 다용도실(세탁기, 보일러)의 소음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13타입 세대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냉장고(160L이하)가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중.대형 냉장고 설치시 복도 공간이 협소해져 통행이 불편함
- 세대내 에어컨을 설치 시에는 6평이하 벽걸이형으로 설치하거나, 에어컨 실외기 길이가 700mm이하, 깊이는 260mm이하로 설치해야 함
- 각 세대 발코니 안전난간대는 콘크리트 또는 안전유리 재질로 설치되어 있음

문정동원룸 입주자 유의사항

- 인근 주택과 인접하여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
- 주택의 주변(좌우)이 공장(좌측:자동차 공업사,우측:샤시공장)으로 소음발생이 예상되고, 남측으로 인근 주택(2동)이 있어 소음 가능성이 있음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건조 등의 조건 일때 충분하게 환기시키지 않을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샤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확장형 창호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른 결로를 저감하고자 전,후면 구간에 단열을 시공하였으나 일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발코니 외부(5층 일부세대는 다락방에 설치)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입주자 개인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시에는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있으니, 이삿짐 운반 시 실외기는 이삿짐사다리차(일부세대 계단실 이용) 등을 통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에 옮겨 놓고 바로 에어컨 연결배관(냉매배관)실시하여 추후 입주 후에 설치시에 예상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바람
- 같은 층이라도 방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간에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인근 주택에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유의요망)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보행로), 기타 인근 주민시설 등에 의해 환경권 및 사생활권(실내투시 및 소음 등)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실간 조적벽체위 석고보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못박음 등에 의한 벽체가 파손될 수 있고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2~3층은 계단이 있어 빨래방 이용이 쉬우나, 4~5층은 직접이용 계단이 없어 상대적으로 이동길이가 김
- 1층 홀 폴딩도어 개폐여부에 따라 세대 내부 보안에 영향이 있음(출입구에는 보안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홀 폴딩도어가 오픈되면 외부인들이 세대 내부로 출입할 수 있음)
- 관리사무실은 별도로 없으나 입주 후 청소용역 및 관리용역비 등 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단지는 입주민용 지상주차(8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 높이는 2.3M로 되어있음

역삼동원룸 입주자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음
- 역삼동 주택은 인접대지와 근접하여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되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여야 함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전 세대 발코니 확장공사 시행함
- 사면이 인근 주택에 인접해 있어 소음발생 등에 유의요망
- 동절기 등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건조 등의 조건일때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샷시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람
-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발코니확장형 창호로 인한 실내외 온도 차이에 따라 일부구간에 결로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등의 설치로 인근주택에 소음피해, 사생활 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유의하여야 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1층 계단실하부에 세탁실이 있으나 층고가 낮아 세탁기 및 건조기 이용시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관리사무실은 별도로 없으나 입주 후 청소용역 및 관리용역비 등 추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단지는 입주민용 지상주차 7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통행 높이는 2.3M로 되어있음
- 1층 주민공동시설과 1층 필로티 휴게공간은 입주민 및 지역주민의 모임공간인 사랑방(가칭)으로 계획되어 있음
- 1층에 주민공동시설(사랑방) 및 세탁실 등으로 인해 위층세대에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있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장소가 세대내 보일러실에 있어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 에어컨 냉매 배관이 설치되어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307호,408호 현관 전면부에 기계 급배기구 환기시설이 있어 복도 샷시창 개폐시 냄새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같은층 이라도 방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세대에서는(206, 207, 307호)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간에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강일2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 단지 주변으로 4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으로 도로 건너편에 주차 또는 차량관련 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근린상업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아직 미개발된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있어서 향후 개발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지 서측으로 미개발된 준주거부지가 있어서 향후 개발시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대지 서측으로는 0.5km거리에 5호선 상일동역이 위치하고 있음.
- 대지 동측으로는 전면도로 건너편에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반경 300m 정도 위치에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가 남북으로 지나가고 있음.
- 지구내 기반시설은 향후 심의 및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총세대수는 76세대로 국민임대주택으로만 구성된 단지임.
- 또한 전용면적 19㎡, 30㎡, 33㎡로 단위세대 면적이 구성되어 있음.
- 전면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25m 대로변에 위치하여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남측 및 서측면의 세대는 남측 및 서측 도로 너머 건물로 인하여 채광 등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대지의 고저차 및 녹지공간 확보, 창호사이즈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함.
- 저층(1~2층)에 차량진출입구(차단시설), 필로티 주차장, 차량진입램프,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친환경계획을 고려하여 지상 필로티주차 및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어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소유 주차구획은 지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가 이용자와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층고로 인하여 지하주차 출입이 불가할 수 있음 [(예) 생계형차량(탑차), 화물차, 대형 SUV, 소형버스 등]
- 대지(건물) 중앙부에 중정과 계단식 데크 공간이 위치하고, 소음 및 사생활침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상에 기재된 공용면적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계약면적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건물의 옥상부에 옥상 조경 공간 있음.
- 후면과 남측면 세대는 지하주차장 램프와 세대가 인접된 구간이 있어, 소음 및 야간에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 특성상 건물 외부 4면의 도로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통로(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단지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여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공공보행 통로는 향후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대지 주변 4면에 건축한계선으로 인한 공지가 위치하고 있음.

강일2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 대지 주변 4면에 약간의 레벨차가 있어서 접근통로에 경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 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자주 환기 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유의해야함.
-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의 층벽세대는 단위세대 평면이 다소 상이함.
- **강일2지구 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은 중정형 및 복도식 공동주택으로 사생활 침해 및 환기 문제 등이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비해 불리함.**
- 개별보일러는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으며, 장비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및 세탁기, 수전류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의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의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되어 있으며, 청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함.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 할 수 있으며, 난방 가동시 온수분배기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 및 사용시 드레인(물빠짐) 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에어컨 형태에 따라 에어컨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겨울철 입주시 구조체가 축열되어 있지 않고 공가세대 등으로 인한 열손실로 난방효과가 적게 나타날 수 있음.
- 저층부 일부세대는 공용재산인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및 가로등 설치로 인한 세대내부 사생활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동별 배치에 따라 같은 방향이라도 층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동의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세대별 창호 모양 및 사이즈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공공시설(중정, 휴게공간, 필로티, 옥상조경, 관리실, 보행로, 자전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분리수거공간 등)의 설치로 생활소음 및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상부세대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램프 등의 주변일부세대의 경우, 차량의 진출입시 전조등, 경고음 및 공회전 등에 의한 눈부심, 소음, 매연 등 불편사항을 겪을 수 있음.
- 지하에 빨래방, 세대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기계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DRY AREA가 일부 동 및 보행동선 주변에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저층세대의 경우 차로, 보행로 및 인근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에서 실내가 투시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주민공동시설 및 근생시설의 면적에 조정이 있을 수 있음

강일2준주거2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 준공 후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하며,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1층 주차장에서 물청소 등을 할 경우 트렌치로 오염된 물이 흘러 시설물 및 차량 등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차장내에서 물청소는 불가함.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전기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및 음식쓰레기 수거함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발코니에는 환기설비 장치 및 배관의 설치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음.
- 각 세대 창호는 복층유리, 방충망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안전에 유의해야 함.
- 옥상 조경공간은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며 안전에 유의해야하고, 세대내 환기를 위하여 환기팬(무동력 흡출기)이 설치됨.
- 공용부의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설, 증설, 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내 에어컨 실외기 공간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중문 미설치), 보일러와 같은 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공간활용 시 사전에 실측 후 사용하여야 하며,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외부 창호를 개방 후 사용해야 하며 소음 진동이 세대내부로 전달될 수 있음.
- 보일러는 실외기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며 동절기시 시스템루버의 외기 차단에 주의하여야 함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동의 하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에 불리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불빛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시 발코니 바닥과 실외기 그릴의 단차에 의해 실외기 설치시 하부에 실외기 높임 발판을 설치해야 할 수 있음.
- 공동주택 하부는 부대복리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 생활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1층 - 주민공동시설(빨래방, 세대창고)
 - 1층 - 근린생활시설, 관리실
 - 2층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울현리엔파크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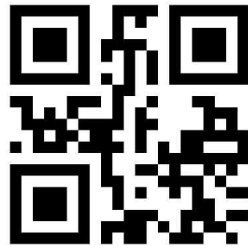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못한 별도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공항, 철도, 도로, 유흥시설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인근 혐오시설에 의한 악취, 분진 등의 불편사항이 입주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개 기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내외부환경(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바랍니다.
- 본 사업대상지 반경 1.5km부근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장지역이 있음.
- 본 사업대상지 반경 2km부근에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이 있음.
- 본 사업대상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음.
- 본 사업대상지 북측으로 약 1.2km거리에 LPG가스 충전소가 있음.
- 본 사업대상지 동남측에 울현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산책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사업대상지 남측으로 약 300m거리에 SRT 노반(건축) 신설공사 현장이 있음.
- 본 사업대상지와 세곡동성당 사이에 위치한 6m도로 약 30m하부로 SRT수서고속철도터널이 위치하며, 철도운행으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단지 및 주변 여건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편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 또는 하자 등을 제기할 수 없음.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각종 영향평가 포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단지설계, 동별 설계, 세대내부 설계, 외부 및 내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 등이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자재가격의 비정상적 급등, 갑작스런 관련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
- 동일타입이라도 측벽에 위치한 세대는 벽체마감에 따라 실제면적이 더 클 수 있음.
- 현관, 발코니, 화장실 단차는 세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설계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급배기용 환기탑,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등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냄새 및 해충, 소음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람(지상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동은 냄새, 소음 및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보행로, 주민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생활 소음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경사진 도로 및 곡선도로, 주통행도로, 인근산책로, 부대시설이용 등으로 인하여 차량전진등, 보안등, CCTV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및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출차 주의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승강기, 각종기계, 환기, 공조설비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저층부 등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실 또는 이형평형으로 인한 상하층 간에 설치되는 우수, 오수배수 선통통의 배수에 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새시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였으나, 외부 발코니 새시 설치로 발코니창, 콘크리트난간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창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하여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특히 빨래 건조, 가습기 사용 등으로 습기가 많을 시에 주의해야 함.
- 지하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된 개별보일러, 수전류, 배수관, 트랩(Trap) 등이 겨울철에는 동결 또는 동파 될 수 있음.

울현리엔파크 유의사항

- 에어컨 실외기 공간계획은 일반적인 사이즈로 계획하였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실제크기를 확인해야 함.
- 세대 내외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으며, 설치를 원하는 세대는 개별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일부세대의 경우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 시 승강기를 이용하여야 함.
- 각 동의 저층부 일부세대는 야간에 보안등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음.
- 공동생활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주방의 환기후드 작동 시 소음이 전달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총 44대(세대당 0.5대) 이며 지하주차장 주차구획은 일반 주차구획[2.3m×5.0m] 32대 (여성주차 포함), 경차 주차구획[2.0m×3.6m] 4대, 장애인 주차구획[3.3m×5.0m] 2대로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여 지하1층 아파트 주동 출입구 근처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음.
- 인허가 과정에서 아파트 외관디자인(입면, 색채, 재질, 조경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공동창고가 구획되어 있으며, 창고내 내부시설(선반,칸막이등)은 설치되지 않음.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내용
커뮤니티룸	1개소
자전거주차	20대

- 동 1층 주출입구 부근에 경비실 및 커뮤니티룸이 위치하고 있음.
-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은 피난방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출입할 수 없음.
- 세대내 벽체 내부에는 전력선, 통신선 및 설비배관(급수, 온수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커뮤니티룸 내부시설(가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15호~19호라인 세대는 필로티 하부에 주차램프가 위치하여 진동 및 소음, 차량전조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비·눈가림 등을 위한 주차램프 캐노피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7~19호라인 저층세대 발코니창호 하단에 캐노피가 연결되어 미관저해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상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이삿짐 차량은 외부도로를 이용해야하는 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현장 확인 필요
- 1호~3호라인 세대(29C, 26A, 25A)는 사다리차량의 이용이 불가하며, 이삿짐 이동 시 지하주차장(진입 높이 제한 2.3m)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사 전 이동 동선 등 확인 필요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

0

목차

연번	목록	내용
1	한눈에 보기	무엇을·누구에게·언제까지 - 3줄 요약 카드
2	신청 일정 한눈에	공고~계약~입주까지
3	나, 신청할 수 있나요?	유형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4	꼭 내야하는 서류	대상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발급처
5	이런 경우 떨어져요	신청 가능하나 추후 탈락·결격처리 되는 사례(경고)
6	서류, 이렇게 발급하세요	보완 잦은 발급 형식 팁
7	자주 묻는 질문(FAQ)	반복문의 항목
8	어려운 말 풀이	공고 핵심용어 미니 사전
9	문의처	관할센터·접수처·필요 인증서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은

<별표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공적자료(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항목 산정방법

구분	자산 기준
총 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구분		자산 기준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채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부터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 (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이 외 개인 간 사채 인정불가)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 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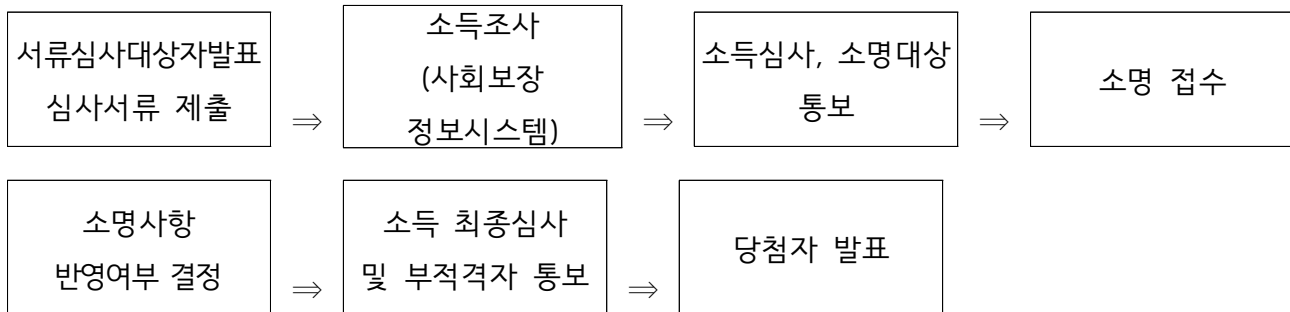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소득 심사업무 처리 절차도



- ※ 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 소득의 일반적인 조사 및 소명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훈령, 고시 또는 지침에 의함.
- ※ 상시근로자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②국민연금공단 자료 ③한국장애훈고용공단 자료 ④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됨.

■ 소득 소명 반영 여부 주요 예시

소명사항	반영여부
동일사업장 2개이상 소득 중복	반영(높은 금액 반영)
소득자료가 현재 소득과 상이	소명기간 내 원천기관 자료 수정 및 확인서 제출시 반영
공고일 현재 휴직자 또는 휴업	미반영(해당소득 포함)

※ 소명관련 주요사항을 예시한 것으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명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며, 조회된 공적 자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적자료 원천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반영함.

<별표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기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중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우편접수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 작성방법

- ①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건설형) 인터넷신청요청서 1부
-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자필서명 필요)

■ 접수기간 : 2026. 8. 13.(목) ~ 8. 14.(금) (8월 18일 화요일 도착분까지만 인정)

※ 반드시 등기우편 발송

등기우편 외 일반우편/택배/착불배송 등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시 접수하지 않음

■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층 맞춤형주택공급부 1~2인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담당자

- 우편접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공사에서 **단순 인터넷 입력대행**하는 형태로, 공고문 미숙지로 인한 신청서 내용누락 및 오기재 등의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등기우편)는 **일반공급, 주거약자 선순위자(소득 50%이하) 및 우선공급 대상자 중 중증 장애인 및 고령자(만65세 이상) 등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소득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청이 불가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서에 인터넷 청약대행 시 필수 입력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접수 자체가 불가하여 **결격 처리되므로**, 등기우편 제출 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득체크 등)
- 첨부된 신청서 예시자료 및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착오기재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류제출 이후 신청유형에 대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은행 오기재시 납입인정회차가 0회처리** 되오니, 반드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배송 중 분실, 도착지연 등을 대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발송한 **등기우편의 등기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우선공급 신청용

[예시1]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주택 및 유형: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3㎡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7㎡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9㎡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22㎡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23㎡ ☐ / 방화동원룸 **우선공급** 13㎡ ☐ / 방화동원룸 **우선공급** 17㎡ ☐ / 문정동원룸 일반공급 14㎡ ☐
 문정동원룸 **우선공급** 14㎡ ☐ / 역삼동원룸 일반공급 12㎡ ☐ / 역삼동원룸 **우선공급** 12㎡ ☐ / 강일2준주거2 일반공급 19㎡ ☐
 강일2준주거2 **우선공급** 19㎡ ☐ / 강일2준주거2 일반공급 30㎡ ☐ / 율리안파크 일반공급 29㎡ ☐ / 율리안파크 **우선공급** 29㎡ ☐
 천왕여성 일반공급 14㎡ ☐ / 천왕여성 **우선공급** 14㎡ ☐

3. 신청순위 : • 1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 • 2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1순위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해당자격 택1, 일반은 체크x) : 중소기업업체 청년근로자 ☒, 수급자 ☐]

* 우선공급 자격 미 기재시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청약신청이 진행됩니다. 우선공급물량은 공고문 참고.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0 명, 태아의 수 0 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본인	홍길동	9	8	7	6	5	4	-	1	2	3	4	5	6	7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김을동	9	8	1	2	3	4	-	2	0	1	2	3	4	5	분리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증명이 불기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u> 2001 </u> 년 <u> 1 </u> 월 <u> 1 </u> 일
②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③청약저축 횟수 <u> 32 </u> 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u> 우리은행 </u>)
④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인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⑥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입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 (한가지만 기재) <u> ① </u>)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등 5.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8. 이메일주소 : sh1234 @ I-sh.co.kr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년 8 월 13 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일반, 우선공급 신청용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1. 신청주택 및 유형: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3㎡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7㎡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19㎡ ☐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22㎡ ☐
 방화동원룸 일반공급 23㎡ ☐ / 방화동원룸 **우선공급** 13㎡ ☐ / 방화동원룸 **우선공급** 17㎡ ☐ / 문정동원룸 일반공급 14㎡ ☐
 문정동원룸 **우선공급** 14㎡ ☐ / 역삼동원룸 일반공급 12㎡ ☐ / 역삼동원룸 **우선공급** 12㎡ ☐ / 강일2준주거2 일반공급 19㎡ ☐
 강일2준주거2 **우선공급** 19㎡ ☐ / 강일2준주거2 일반공급 30㎡ ☐ / 율리안파크 일반공급 29㎡ ☐ / 율리안파크 **우선공급** 29㎡ ☐
 천왕여성 일반공급 14㎡ ☐ / 천왕여성 **우선공급** 14㎡ ☐

2. 신청순위 : • 1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 • 2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편접수는 일반공급 1순위자 및 우선공급 대상자만 신청 가능

2-2. [우선공급(해당자격 택1 일반은 체크x) : 중소기업체 청년근로자 ☐, 수급자 ☐]

※ 우선공급 자격 미 기재시 우선공급이 아닌 일반공급으로 청약신청이 진행됩니다. 우선공급물량은 공고문 참고.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_____명, 태아의 수 _____명

4. 신청자 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
본인							-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					분리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합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주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
②신청인이 공고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1~2인 가구로 거주하는 자로서 퇴거를 희망하는자 ☐
③청약저축 횟수_____회(공고일전 청약납입회차만 인정) (은행명 : _____)
④신청인이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중 6월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252일)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된 사람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증명 서류에 따라 1년 이상 피보험자격이력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른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로 확인된 사람 ☐
⑥사회취약계층 (공고문 사회취약계층 가점사항 참조 두개이상 해당해도 3점) (자격 : (한가지만 기재) _____) ☐

1. 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3.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등 5. 북한이탈주민, 6. 아동복지시설장추천자 7.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의료급여이외 수급자 (신청자 포함 동일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해당) 8. 영구임대주택거주자중 청약가입자

6. 신청인주소(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_____) _____ - _____

8. 이메일주소 : _____@_____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주거약자주택 신청용

[예시2]

강일2준주거2 / 율현리엔파크 도시형생활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0.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해당사항에 체크, 아래 자격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가능)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 1~7급자	☐		

1. 신청유형 : 강일2준주거2 33㎡ ☒ 율현리엔파크 29㎡ ☐

-주거약자주택 물량은 강일2준주거2 전용 33㎡, 율현리엔파크 29㎡에만 배정돼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에 체크할 시 결격처리되므로 접수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일반공급) : • 1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 • 2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

※ 우편접수는 선순위자만 신청가능하므로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1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접수할 경우 접수 불가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1 명, 태아의 수 0 명

4. 신청자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본인	홍길동	9	8	7	6	5	4	-	1	2	3	4	5	6	7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	김을동	9	8	1	2	3	4	-	2	0	1	2	3	4	5	분리 배우자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u>2001</u> 년 <u>1</u> 월 <u>1</u> 일	
②청약저축 횟수 <u>32</u> (공고일전 청약납입 인정 회차) (은행명 : <u>우리은행</u>)	
③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이외 수급자 ☐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

6. 신청인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도로명주소 기재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1234 - 5678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 년 8 월 13 일

신청인 : 홍길동 (인장 또는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주거약자주택 신청용

강일2준주거2 / 율현리엔파크 도시형생활주택 인터넷신청요청서

0.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격 (해당사항에 체크, 아래 자격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가능)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 1~7급자	☐		

1. 신청유형 : 강일2준주거2 33㎡ ☐ 율현리엔파크 29㎡ ☐

-주거약자용주택 물량은 강일2준주거2 전용 33㎡, 율현리엔파크 29㎡에만 배정돼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둘 다에 체크할 시 결격처리되므로 접수처리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순위(일반공급) : ·1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 ·2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 우편접수는 선순위자만 신청가능하므로 월평균소득 50% 이하만 신청가능하며, 1순위자가 아닌 사람이 우편접수할 경우 접수 불가

3. 가구원수 : 신청자 본인 및 태아를 제외한 가구원수 _____ 명, 태아의 수 _____ 명

4. 신청자인적사항 분리배우자도 오른쪽 체크 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배우자 없음 ☐
본인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			분리 배우자 ☐

•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합한 사람 신청불가(배우자가 국내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소지 거주불명자인 경우등)

5.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신청자 기준으로 작성

①서울시거주기간(서울시 연속거주 시작일자, 만19세 이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
②청약저축 횟수 _____	(공고일전 청약납입 인정 회차) (은행명 : _____)
③사회취약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의료급여이외 수급자 ☐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해당)

6. 신청인주소 (주민등록표상 도로명 주소) :

7. 연락가능 전화번호 : (010) _____ - _____

신청인 본인은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주택 소유 및 기타 입주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당첨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인터넷공급신청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공고문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장 또는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신청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반드시 아래 [필수]항목에 모두 동의하여야 (☑ 체크) 신청접수 가능하며, 미동의시 신청 불가>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보 자료 활용 등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인.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재공공 주택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포함) - 주소,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등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다.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노년재단·장학재단),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사업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사업 수탁자, 주택법 제54조의2에 따른 입주자모집 대행업소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등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관리분석 실시 및 계약체결 전반적인 사항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인사소, 한국노년주택공사 및 기타 지방공사, 내국주거사업자소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 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입주자모집 대행업무 수탁자	입주자모집 관련 심사, 계약체결, 상담 및 안내 등	2항 다목에 따른 항목 (기본·소득·자산·기타 내역)
서울특별시	주택소유현황, 세대원정보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기타 지방공사	임대주택 중보 입주여부 확인 및 예비입주자 관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첨내역
NH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대상자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 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약내역
우정사업본부	계약체결 안내문 등 우편발송	성명, 연락처, 주소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
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
차계약기가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임대차를 받으시겠습니까?**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신청자 성명 연락처 010-

20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